

선박 금융

의의와 계약 구조

법무법인 광장 (Lee & Ko)

정우영 변호사

Lee
& Ko



I. 선박금융



- Asset Based Financing의 대표적인 예
- 선박 자체의 교환가치 또는 선박으로부터의 미래 수익 (Revenue)을 담보로 이용

- **Corporate Financing**

무담보 / 대출기간 1~3년의 단기

- **Asset Backed Financing**

물적 담보/ 대출 기간 3~10년 중.장기

- **Project Financ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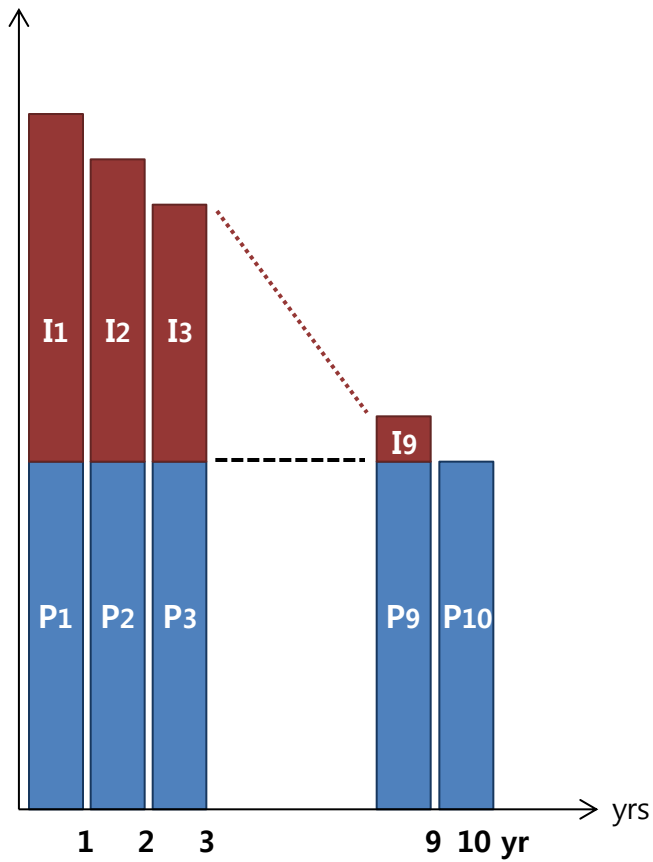
물적 담보 + 현금 수입 담보 / 상대적 장기

I. 선박금융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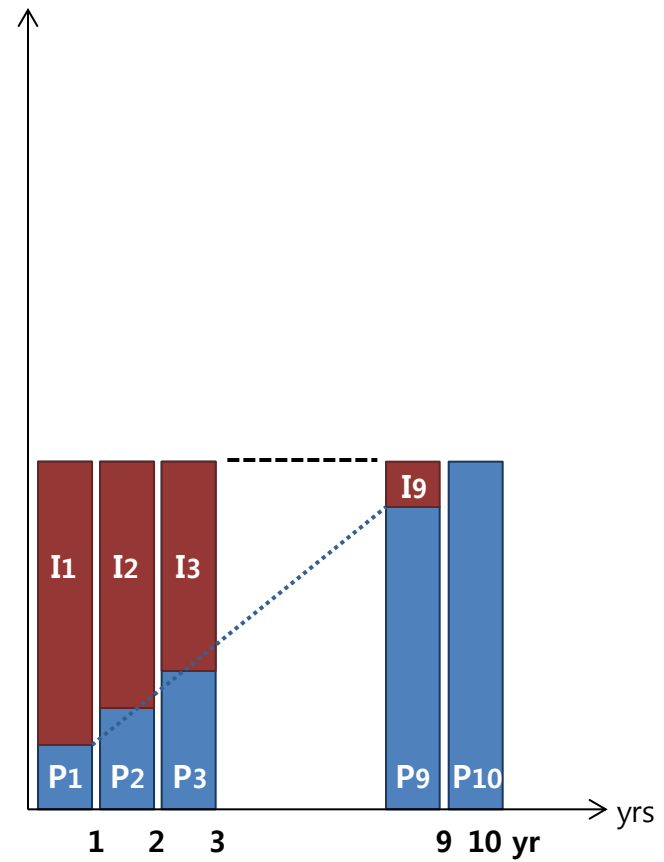
- 대출금의 규모가 크다
- 원리금 상환기간이 대체로 길다(통상 7-15년)
- 원리금합계 균등 상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선박 별 독립된 소유구조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보험이 중요한 담보로 역할을 한다
- 계약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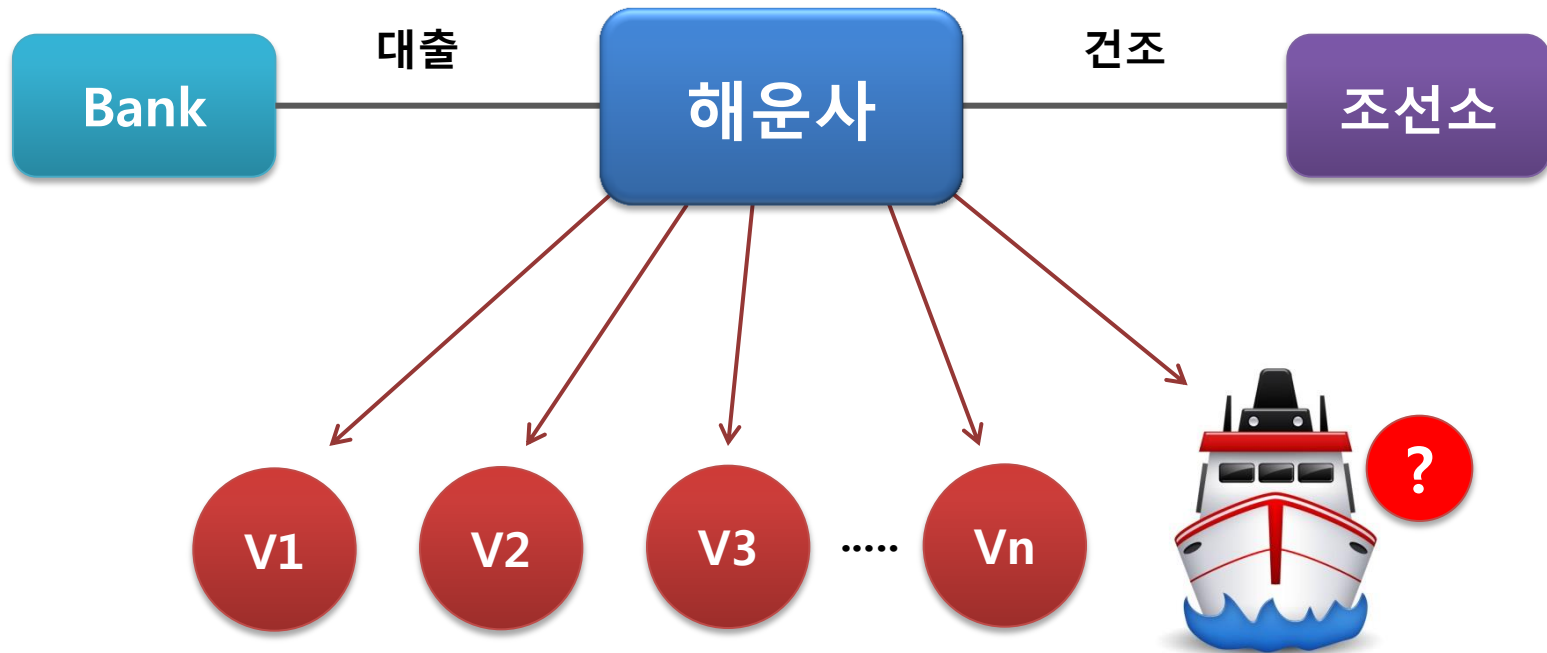
I. 원리금 균등(비교)

원금 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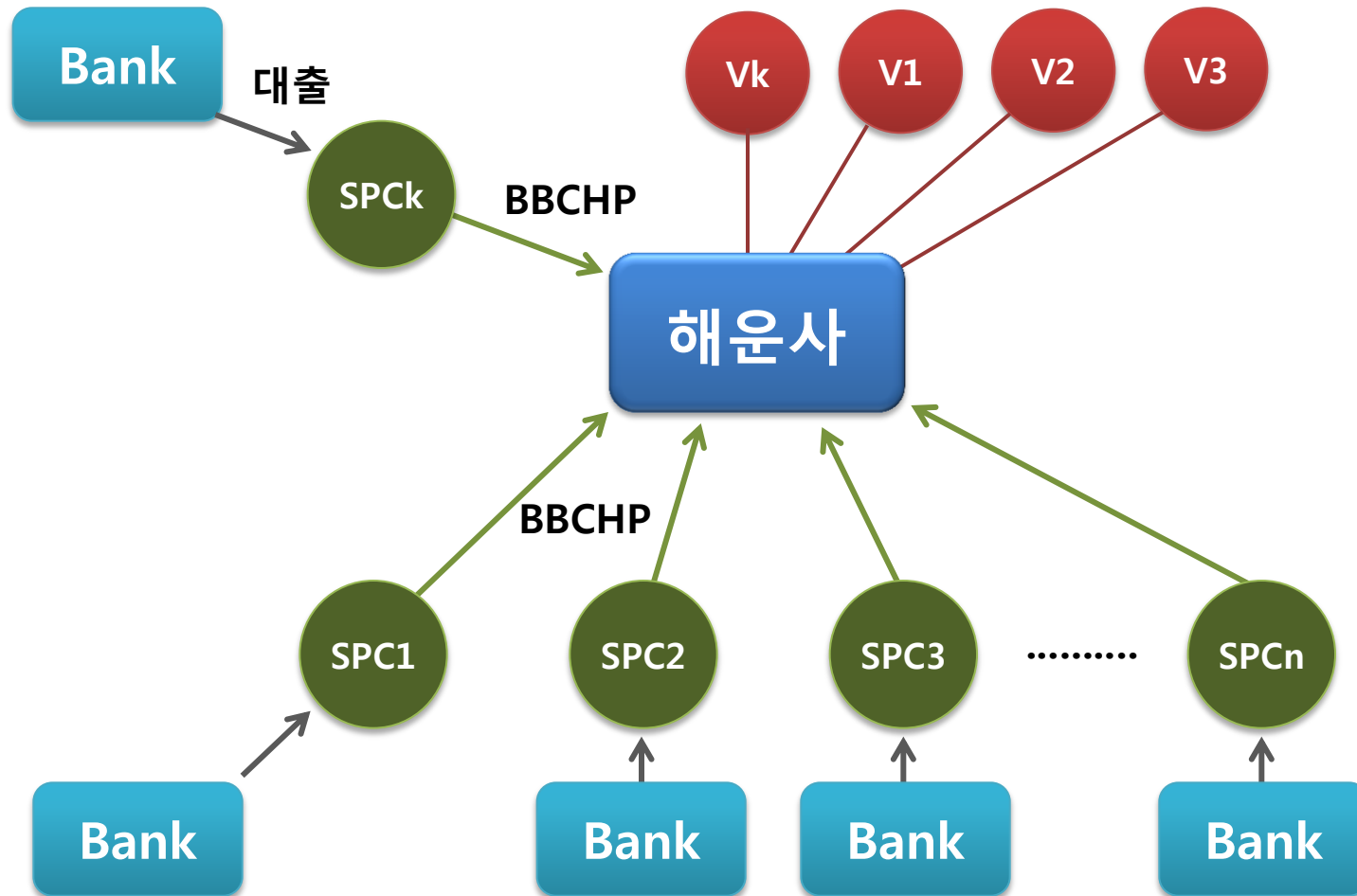
원리금 균등





➡ 법률적 효과는?

➡ Vk가 침몰시 법률효과는?





II. 한국에서의 선박 금융 현황

90년대 이전

- 한국수출입은행(K-EXIM)이 제공하는 선박금융
- 한국산업은행(KDB)이 제공하는 계획조선 자금의 대출
- 일본계 종합상사에 의한 선박금융

90년대 초반

- 일반 금융기관의 유로 달러 금융
 - 한국가스공사가 입찰한 LNG 도입을 위한 선박금융이 계기를 형성
 - 종합금융회사 및 리스회사 선박 금융시장에 경쟁적으로 참여
- * 97년까지 선박금융의 황금기

97년 후반-2004년

- 국내 일반 은행이 주도하는 대형 선박금융은 전무한 상황
- 회계 부정 사건과 북핵 문제로 저조

2004년 이후-현재

- 2004년 이후
국제적인 해운운임 및 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선박금융시장이 최고의 활황 국면을 맞이함
- 2008년 9월경 리만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한 해운시장
의 위축이 지속됨



III. 금융 기관별 선박 금융 태양

- 종류

- ① Buyer에 대한 직접 대출
- ② 보증을 제공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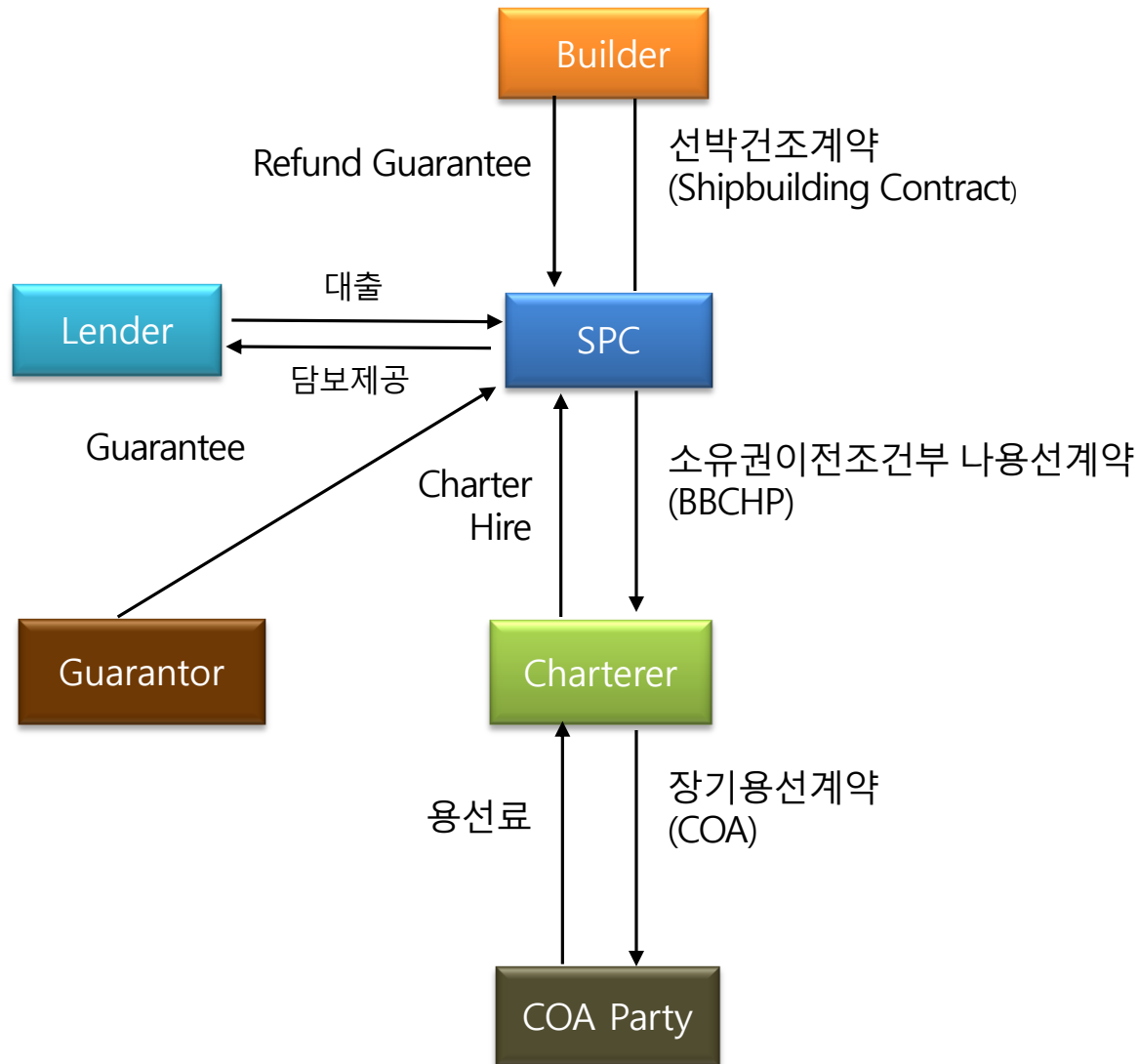
- 장단점

- ✓ 다른 기관에 비하여 저리 자금 모집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 ✓ 금융구조 및 담보 요건을 정함에 있어 융통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 일반은행 주도 선박금융의 실무형태

- ① 선사와 조선소간의 선박건조여부 및 가격, 지급 화폐의 종류 협의
- ② 선사의 대출의향이 있는 금융기관 물색
- ③ 선사와 대출금융기관간의 Mandate (또는 Term Sheet) 교환
- ④ 해외 SPC 설립
- ⑤ 관련 계약 체결
- ⑥ 외환관리법 등에 따른 제반 인·허가 취득
- ⑦ 분할 대출 및 선박 건조 시작
- ⑧ 선박의 SPC에 인도 및 선사에 인도
- ⑨ ⑧과 동시에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등기 완료
- ⑩ 대출금 회수 시작

III. 1. 은행의 일반 BBCHP 개요도



III. 2. 종합상사의 선박금융

■ 종류

단순 금융 주선형:

- 수수료를 받거나 수출실적을 쌓음

금융 개입 형:

- 담보 또는 보증의 제공
- 해외 자회사를 통한 신용 제공 및 자본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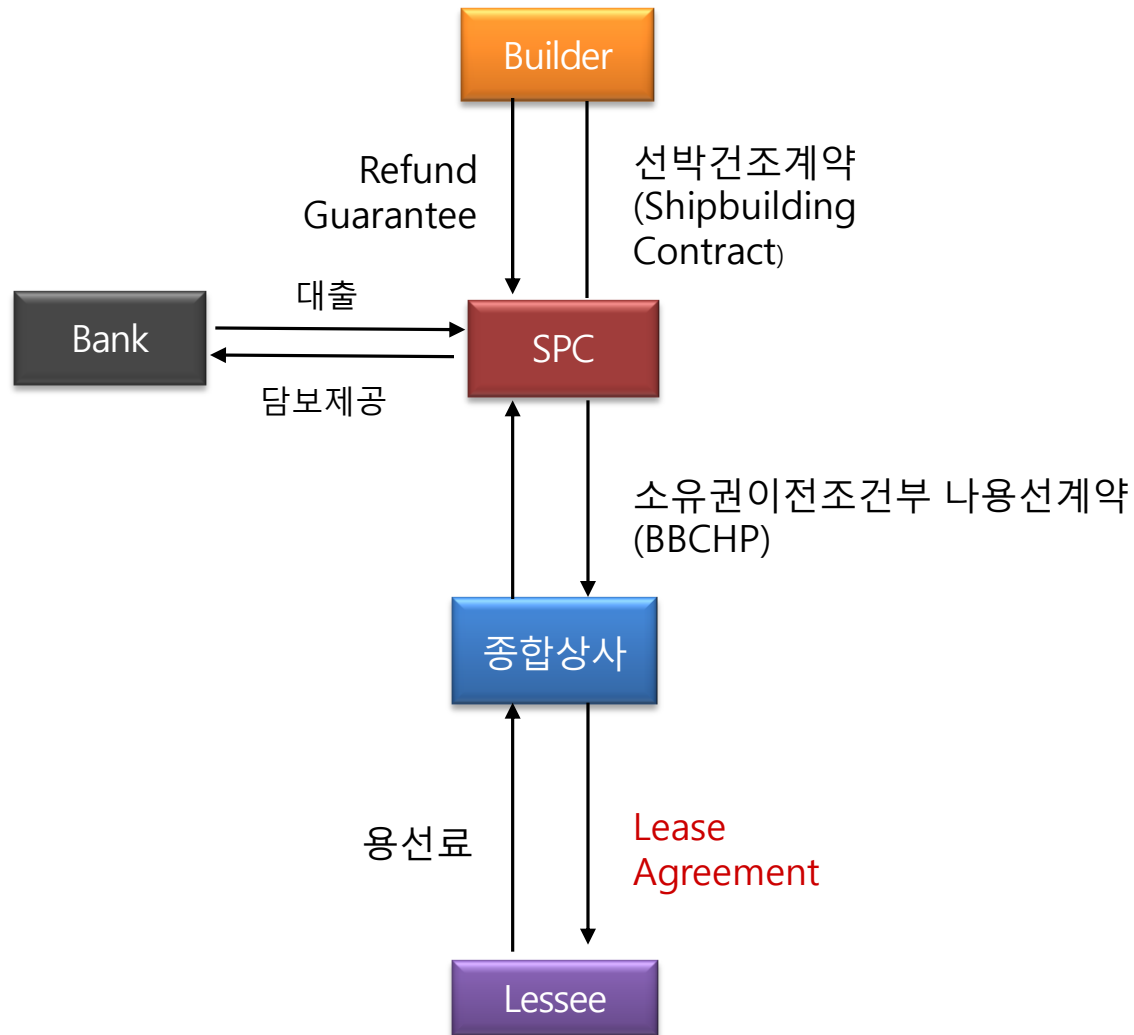
용선 개입 형

■ 장단점

- ✓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
- ✓ 큰 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불리

* 중소형급 선박금융에 많이 활용되었다

III. 2. 종합상사(용선개입형)



- 특징

- ✓ 주로 중소형 선사를 대상으로 함
- ✓ 국내 내항에서 운영되는 중소형 선박 대상
- ✓ 원화 대출이 주를 이룸, 2004년 이후 추이 변경
- ✓ 리스계약 형태로 계약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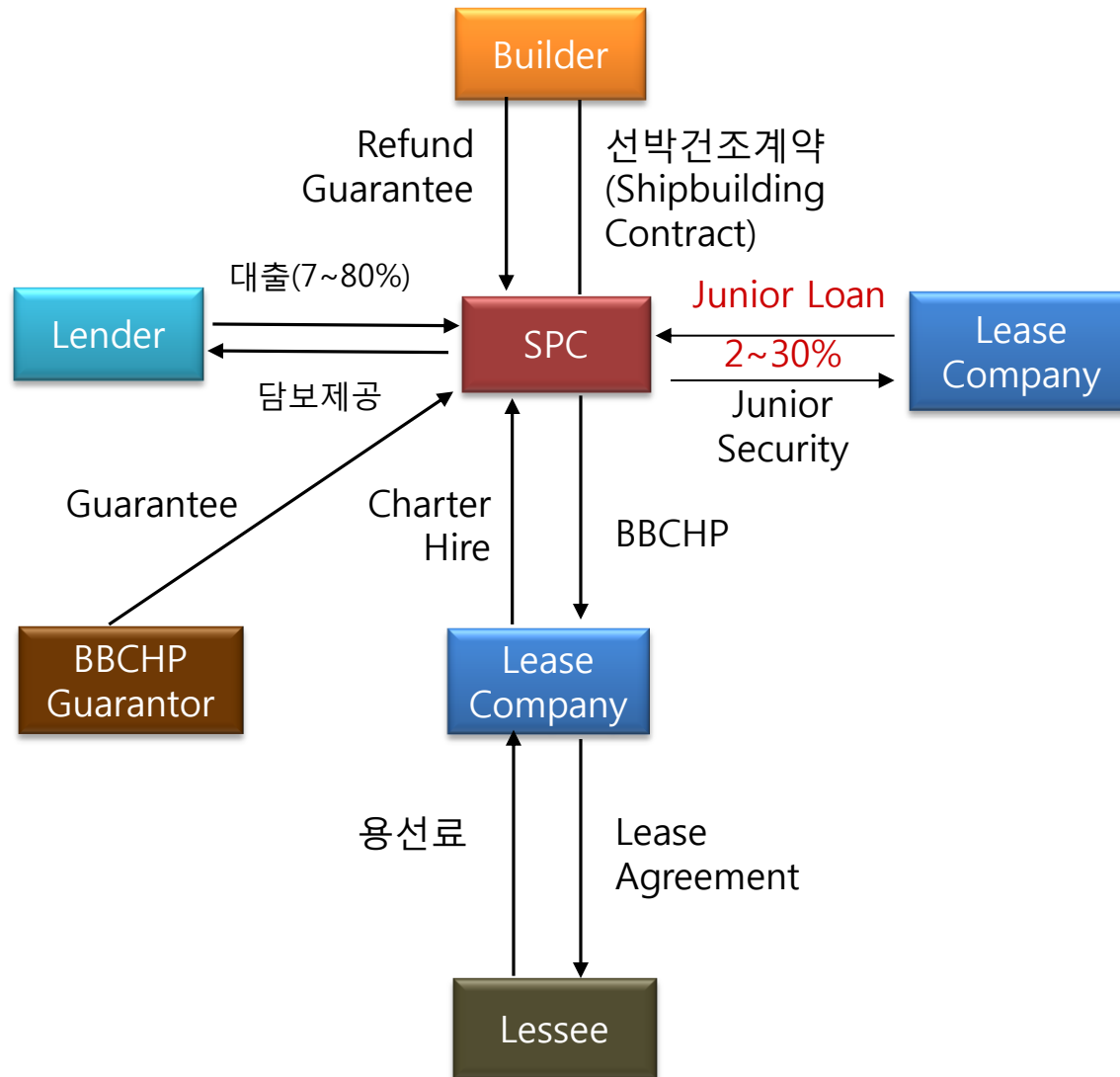
- 다수의 리스회사가 Syndication을 구성하여 외화표시 대규모 선박 금융 거래를 취급

- * 94-97년 사이의 일시적 활황 현상

- 리스회사 주도 선박금융의 실무형태

- ① 선사와 조선소간의 선박건조여부 및 가격, 지급 화폐의 종류 협의
- ② 선사의 의향이 있는 리스회사 물색
- ③ 선사와 리스회사간의 Mandate (또는 Term Sheet) 교환
- ④ 해외 SPC 설립 or 리스회사 직접 취득
- ⑤ 관련 계약 체결
- ⑥ 분할 대출 및 선박 건조 시작

III. 3. Lease 개요도



III. 4. 선박투자회사법이 고려하는 선박금융

■ 특징

- ✓ SPC를 해외에 설립하는 대신 국내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시장에서 선박구입자금을 모집할 것을 고려한 형태의 거래
- ✓ 독일의 Kommendit Gesellschaft Fund (K/G Fund), 노르웨이의 Kommandit Selskap Fund (K/S Fund)를 참조한 것임

III. 4. 선박투자회사법이 고려하는 선박금융

■ 제정이유 및 주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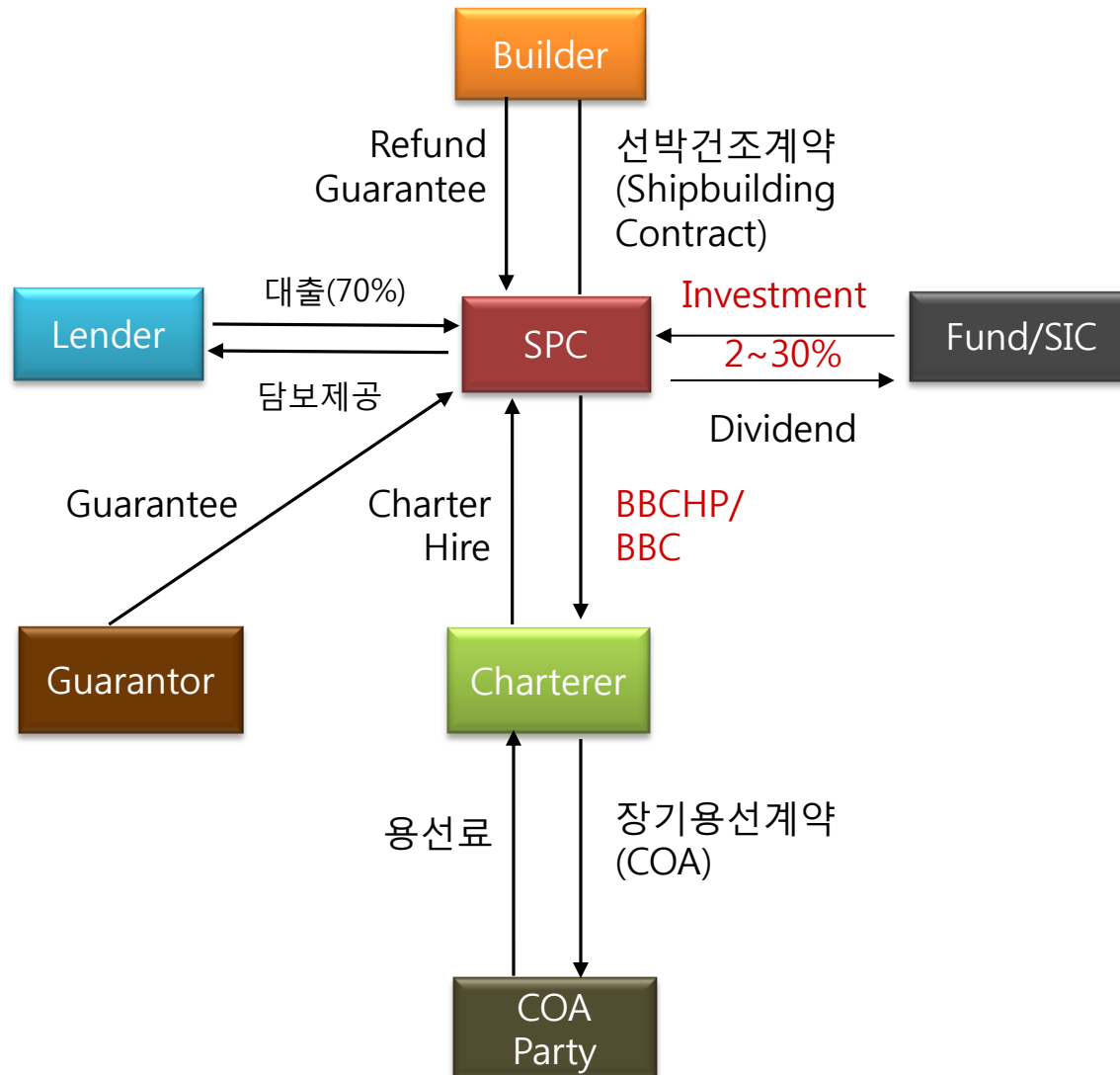
- ✓ 선사들로 하여금 선박도입에 필요한 금액의 20 -30%에 달하는 자기자본 투자금을 국내 주식시장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
- ✓ 국내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설립과 투자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함
- ✓ 2002년 8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5개의 선박운용회사가 설립되었고, 2004년2월 동북아 1호 이후 약 185척의 선박이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해 건조됨

- 2009년도에 투자가 또는 투자가 집단이 등장하여 선박투자회사를 통해 선사에 재원을 투입하게 됨
- 정책적인 이유, 선가상승에 대한 예측 등에 기초한 기관투자가의 과감한 투자라는 점이 특징적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소위 펀드투자가 자유로워진 상황과 관련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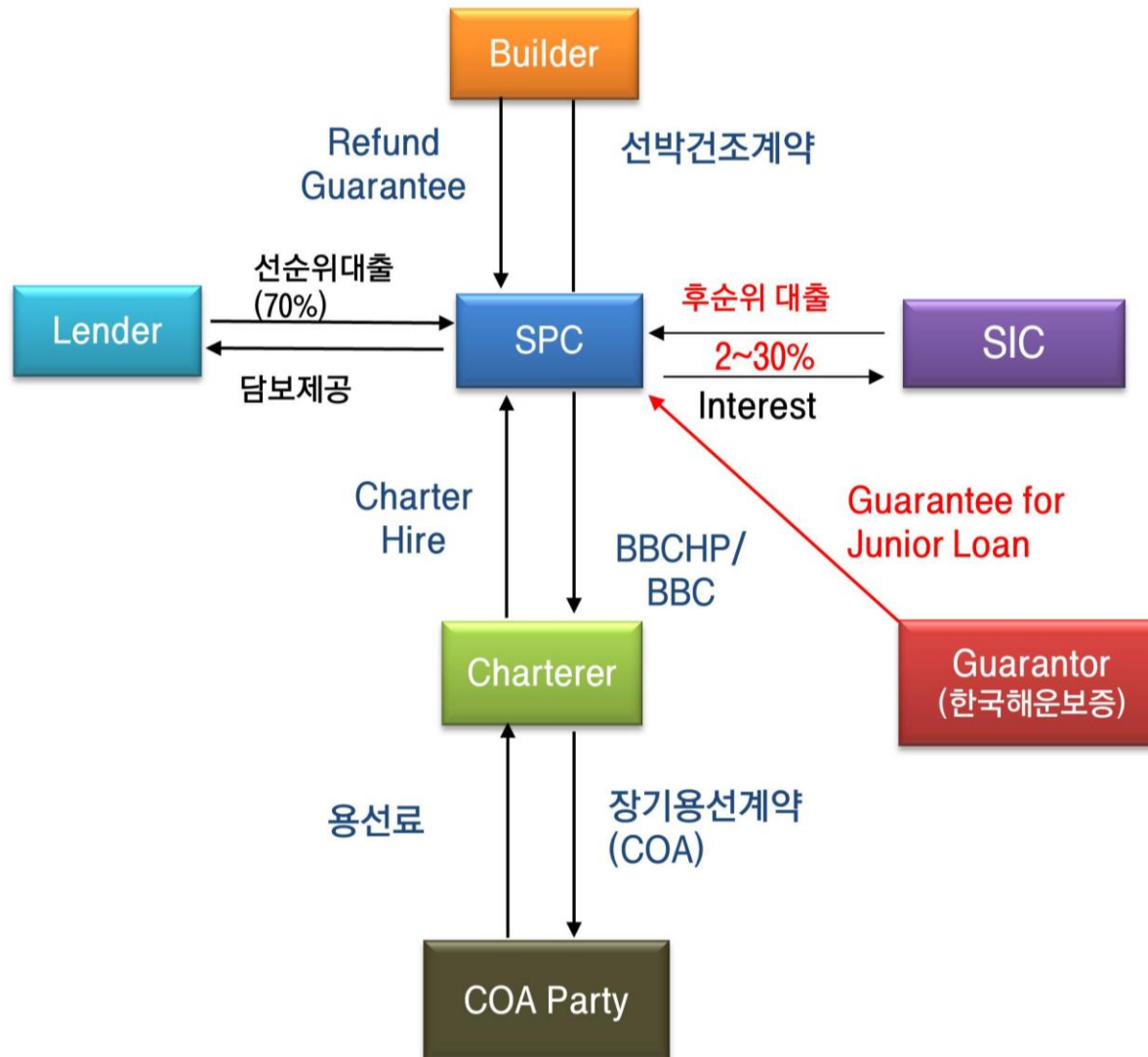
■ Fund 가입 형태의 선박금융

- ① 선사와 조선소간의 선박건조여부 및 가격, 지급 화폐의 종류 협의
- ② 선사의 자산 운영사와 협의
- ③ 선사와 자산운영사간 조건 협의
- ④ 해외 SPC 설립 or Fund 직접 취득/ Senior Loan 유치 여부/
BBCHP or BBC 결정/
- ⑤ 관련 계약 체결
- ⑥ 투자 및 대출 및 선박 건조 시작

III. 6. Fund 개요도



III. 7. 후순위 대출 보증 개요도



■ 특징

- ✓ 몇몇 금융 선진국에서 선박·항공기 분야에서 도입하고 있는 금융의 한 형태
- ✓ 각국의 세제상의 혜택 및 지원을 최대한 거래구조에 편입시켜 동 혜택을 이자율 감소에 사용
- ✓ 미국의 항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U.S. C-FISK Structure), 영국의 해운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Capital Allowance Act / Tonnage Tax Benefit), 독일의 투자에 따른 소득세 공제 혜택 (K/G Fund)
- ✓ 다양한 이용기법 (Accelerated Depreciation, Tax Deferral, Group Allowance)

- 장단점

- ✓ 장래 얻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을 현가화하여 조달 비용의 감소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 ✓ 복잡한 거래구조에 따른 고비용, 세법 및 회계원칙의 변화가 있을 경우 세제상의 혜택이 감소 또는 부인될 위험



IV. SPC란 무엇인가

SPC

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어이며
Special Purpose Vehicle (SPV)이라고도 함

- ✓ Where to establish ?
- ✓ Requirements to consider ?
- ✓ Banking Act ?
- 선박에 대한 과세 여부 (재산세, 양도세), 해당 법인 (SPC)에 대한 법인세 부과 여부 및 세율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편의치적 (flag of convenience):
파나마, 마셜아일랜드, 온두라스, 벨리제, 등

- **1선박 1선주 (SPC)원칙**

- ✓ 선박 소유에 따른 위험이 선사의 기타 자산에 까지 확산되는 것을 방지

-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 (BBCHP)**

- ✓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상 엄격한 외환 및 금융거래 규제를 완화 및 회피하기 위한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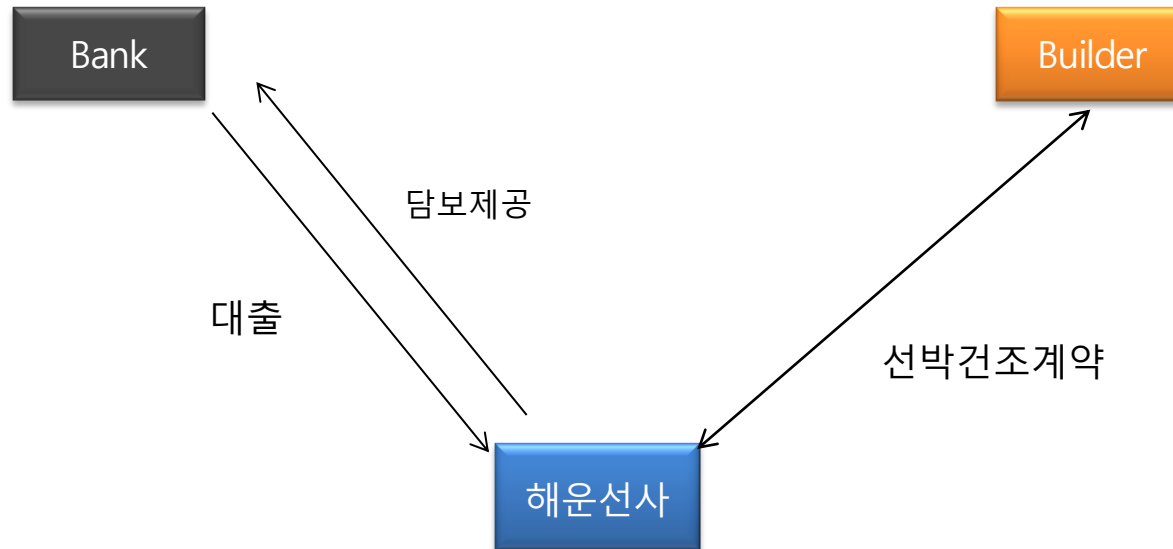
- **현금 흐름의 통제**

- ✓ 특정사업 (선박운송사업)의 현금흐름이 실질 사업주 (운영선사)의 현금흐름이나 다른 사업의 현금흐름과 혼합되지 아니하여 투자자에게 담보로서 진정한 효과를 갖게 함

- SPC가 편의치적제도와 연계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 이용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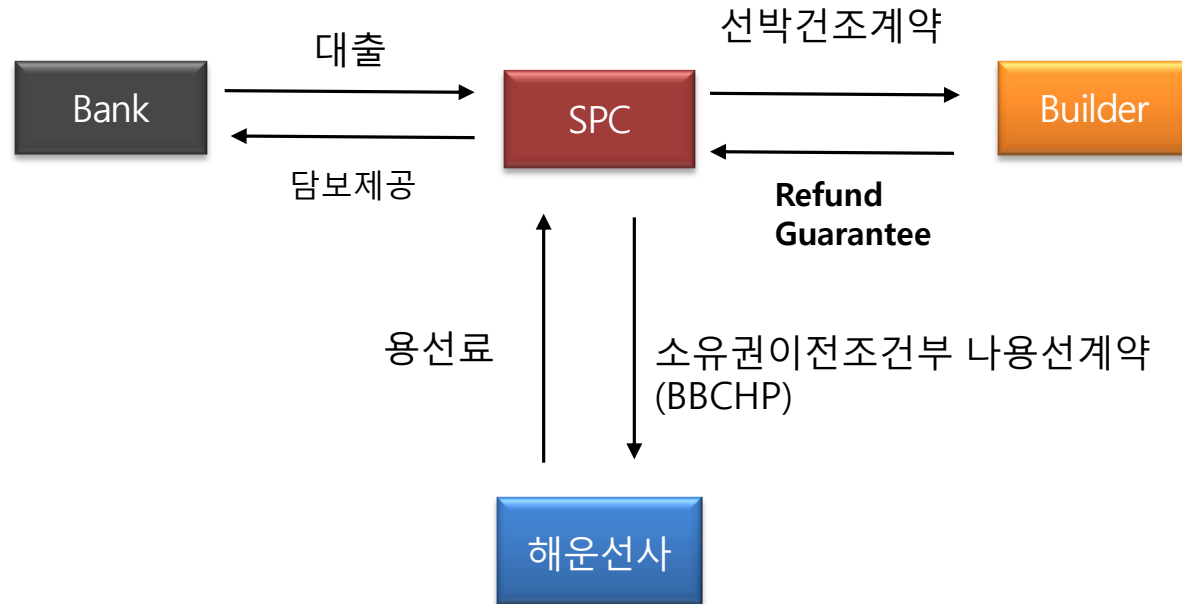
- ✓ 통상의 자유의 정치적 제한에 대한 회피수단
- ✓ 선주 소속국의 정치적 불안으로부터 회피
- ✓ 조세부담의 완화
- ✓ 보다 저렴한 제3국 선원의 활용
- ✓ 금융상의 편의
- ✓ 선박의 안전기준 유지 등에서 비용 절감

- 우리나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금융기관의 선박금융채권 보호에 유리



해운선사가 Work-Out 절차에 들어가면,
위 Bank의 대출 채권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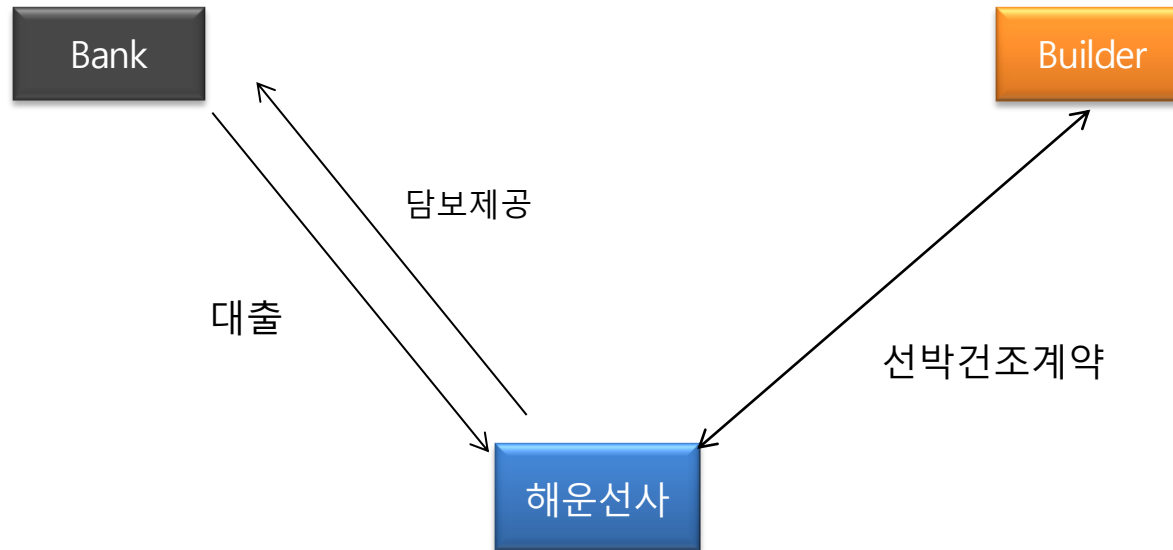
⇒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구속을 받음



해운선사가 Work-Out 절차에 들어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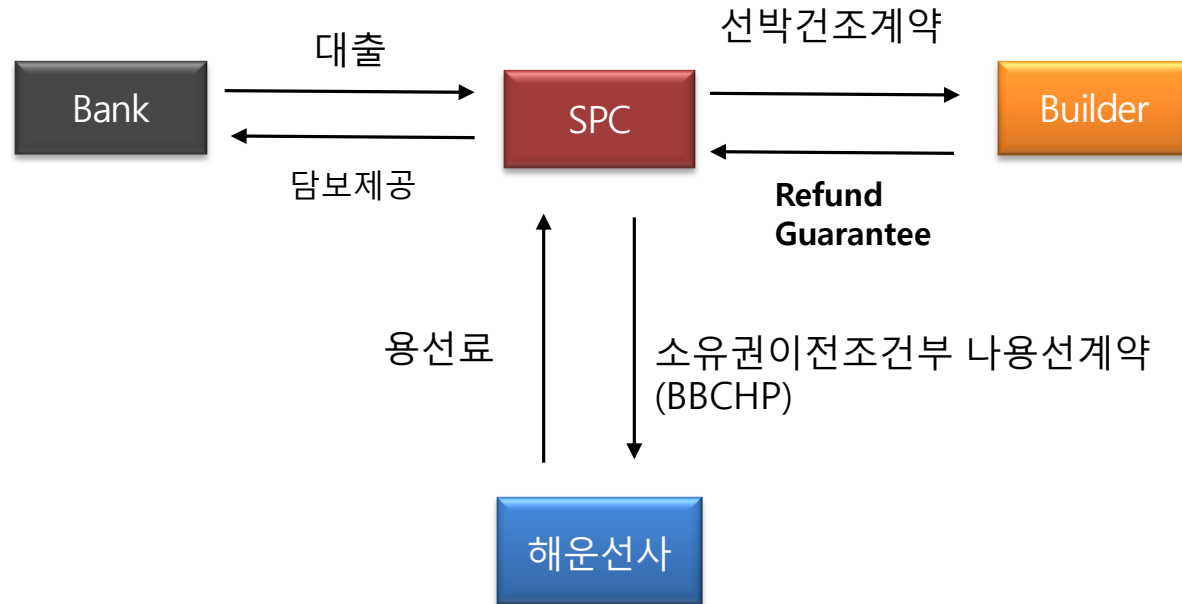
위 Bank의 대출 채권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구속을 받지 않음: 채권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해운선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위 Bank의 대출 채권은 어떤 종류의 채권이 될 것인가?

⇒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



해운선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위 Bank의 대출 채권은 어떤 종류의 채권이 될 것인가?

⇒ 미이행쌍무계약 ... 공익채권

■ 이른바 편의치적제도는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나라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 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01 4 판결 등)

■ 외환관리법상 신고 및 수리의 문제

- ✓ 국내 거주자가 SPC의 주주가 되는 경우

■ 설립의 예

- ① 본사의 부채비율의 증가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단순 매각 이익만을 목적으로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 ③ UK Tax Lease 등의 거래구조 내 편입으로 인해 해당국의 법률상 요구에 따른 경우
- ④ 해외 해운사와 공동투자를 하는 경우

■ 외환관리법에 따른 해외투자신고 필요



V. 선박 금융 기본 계약

- 선박인도 전
 - ✓ Facility Agreement
 - ✓ Shipbuilding Contract
 - ✓ Supervision Agreement or Basic Agreement
 - ✓ Refund Guarantee
 - ✓ Letter of Undertaking

*** Risk Hedge ???

- 선박인도 후
 - ✓ Loan Agreement
 - ✓ Mortgage Agreement
 - ✓ BBCHP Assignment Agreement
 - ✓ Insurance Assignment Agreement
 - ✓ Share Pledge Agreement
 - ✓ Account Pledge Agreement



VI. 선박의 이용 계약과 기업 회생 절차

용선계약 및 운송계약의 성격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회사정리법 제10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해당하는 조항)에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 이행, 존속상 법률적, 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5다38263판결 참조)

√ 용선계약 중 BBCHP의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당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최근 실무는 BBCHP를 쌍무계약으로 인정함.

회생절차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취급

√ 관리인의 이행 선택권: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2)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 Owner 및 화주의 해지권 제한: 대법원 2005다 38263판결에서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예외적인 취급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판결을 기초로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계약 상대방의 해지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종래 파산법원의 실무임.

(*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현행법 제119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 대법원 2005다 38263판결 설시 내용 중)

회생절차에서 미이행 쌍무계약의 취급

- √ 이행선택권 행사 시기: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회 관계인집회)의 종료시 (법 제119조 제1항)
- √ 계약 상대방의 권리: 관리인에 대한 이행선택의 최고 (법 제119조 제2항)
- √ 이행 선택의 법률적 효과
 - 개시 전 미지급 용선료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법 제118조 제1호, 법원의 조기 변제허가를 받는 경우는 예외)
 -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용선료채권은 공익채권화하여 정상 변제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 √ 해지 선택의 법률적 효과
 - 개시 전 미지급 용선료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법 제118조 제1호)
 - 회생절차 개시 후 반선 때까지의 용선료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정상 변제 (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법 제118조 제3호)

대체선사 지정권(Step-in Right)의 행사 가능성

√ 대체선사 지정권(Step-in Right)

- 용선사 디폴트시 COA, CVC 등 화물운송계약 유지를 통한 대출상환 담보 목적
- 대주단과의 관계에서 화주의 계약해지권 제한
- 대주단 요청 시 대주단 및 화주가 동의하는 대체 용선사를 통한 화물운송계약 유지

√ 관리인의 선택권과 충돌

- 대체 용선사와의 화물운송계약 유지는 기존 화물운송계약 해지를 전제로 함 ⇒ 관리인의 이행 선택권과 충돌하므로 법상 허용되지 않음
- 화주가 국내 회사인 경우 국내 도산법의 적용을 받음 ⇒ Step-in Right를 실행하기 어려움
- 화주가 외국 회사인 경우 국내 도산법 적용을 강제할 방법이 없음 ⇒ Step-in Right 실행 가능성이 있음

VI. 2. 회생절차에서의 선박담보권 행사

√ BBC/TC

- 대상선박은 법률적, 경제적으로 용선사의 재산이 아님
⇒ 용선사의 회생절차가 선박저당권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BBCHP

- 대상선박의 법률적 소유권은 SPC에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용선사가 지분을 가짐 (연불취득)
⇒ 용선사의 회생절차 개시가 선박저당권의 실행에 영향을 미침

- 국내에서의 선박저당권 실행

- ⇒ 현재까지의 실무로는 허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임
- ⇒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변제 금액에 대한 관리인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있음

- 해외에서의 선박저당권 실행

- ⇒ Stay Order**가 없는 한 가능
- ⇒ Stay Order를 허용하는 국가: 미국,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 ⇒ Stay Order를 불허하는 국가: 인도, 파나마, 중국 등

(** Stay Order: 해외에서의 도산절차 진행을 승인하여 자국 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중단시키는 법원의 명령)

VI. 3. 용선사 채권자의 가압류에 대한 대응

√ 용선사는 선박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용선사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선박을 압류할 수 없음
(예외: 선박우선평권(Maritime lien)이 인정되는 채권)

√ 용선사의 일반채권자가 벙커를 압류하는 경우

⇒ de-bunkering, 새로 bunker 주입, 출항

⇒ 관련 항구에서 de-bunkering이 불가능한 경우, 청구채권 지급하고 출항할 수 밖에 없음

⇒ 반복되는 가압류에 대비, 선박관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벙커소유자를 변경하는 방안

√ 선박우선평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기초로 대상선박을 압류하는 경우

(예: 가압류시로부터 일정 시한 이전에 발생한 Bunker claim)

⇒ 청구채권 지급하고 압류 해제

⇒ Stay Order를 통해 취소하는 방안 (해당 국가의 법률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주의: 선박우선평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고, 법정지법/선적지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도 나라마다 다르므로 구체적, 개별적인 검토 및 접근 필요)



VII. 도산 절연에 대한 도전

■ 신 기촉법의 주요 변경 내용

신 기촉법은 기촉법에의 참여범위 및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형평성 문제 보완하였습니다.

- 참여범위 확대 : 채권금융기관 → 모든 금융 채권자
- 적용대상 확대 :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기업 → 모든 기업
 - 연기금 · 공제회 등도 기촉법 참여 → 제도의 효과성 제고
 - 중소기업에도 기촉법 적용 → 제도의 수혜범위 확대
- 다만, 모든 금융채권자가 기촉법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기촉법의 장점인 신속성·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용상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은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을 거쳐 소액채권자·사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실적으로 기촉법 절차 적용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기촉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외국기업, 금융회사, 회생절차 등 진행기업, 신용공여액 50억 원 미만 기업 등이 적용 배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2조(금융채권자협의회)

- ①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기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둔다.
- ② 주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을 주관하며,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 ③ 주채권은행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는 단독 또는 다른 금융채권자와 합하여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총 금융채권액(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액을 포함하며, 이하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이라 한다)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채권은행은 지체 없이 협의회 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재판 관할)

- ① 회생사건, 간이 회생 사건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된다.
 - 1.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
 -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 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나. 합명회사 · 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감사합니다

Lee
& Ko